

한·중 FTA 및 한·미 FTA의 환경조항 비교*

박명섭** · 김상만*** · 우정욱****

-
- I. 서론
II. 한·중 FTA 및 한·미 FTA 환경 조항의 의의
III. 한·중 FTA 및 한·미 FTA 환경 조항의 비교
IV. 결론
-

주제어 : 한·중 FTA, 한·미 FTA, 환경조항, 환경 장, 자유무역협정(FTA), 환경

I. 서론

2016년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총 51개국(14건)의 FTA가 발효되었는데¹⁾, 51개국 중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한·중 FTA 및 한·미 FTA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 특히 대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므로 한·중 FTA는 메가 FTA 보다 더 큰 의미가 있고, 한·중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146억 달러 개선, 일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150).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주저자), E-Mail : mspak57@naver.com

***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교신저자), 법학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E-Mail : ksm0301@hotmail.com

****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경영물류학과 교수(공동저자), E-Mail : jungwouk@hanmail.net

1) 정부 FTA 공식홈페이지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2) 2014. 1. 10.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자리 5만3,800여개 창출 등의 무역창출 및 경제성장이 기대된다.³⁾

한편,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의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⁴⁾, 자유무역 확대에 따라 무역과 환경의 연계가 새로운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고⁵⁾, 통상분야에서 환경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정착되었다.⁶⁾ 통상분야의 협상은 주로 무역자유화이고, 환경분야의 협상은 주로 환경보호에 있어 양자는 서로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 바, 양자를 조화시키는데 국제사회는 고민해 오고 있다.⁷⁾ 환경보호 및 환경규제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반면, 개도국들은 소극적인데, 그 이유는 선진국의 환경기준이 높고 환경규정이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어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와 공정한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다.⁸⁾ 최초로 환경을 양자간 무역협정에 포함시킨 것은 1992년의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⁹⁾ 그 이후 미국은 FTA 협상에서 환경을 독립된 의제로 논의해 왔고, EU도 FTA 협상에서 환경을 주요 의제에 포함시켜왔다.¹⁰⁾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 최초로 환경조항을 독립된 장(chapter)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하여 FTA 협상에서 환경문제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¹¹⁾ 미국은 무역진흥권한법(TPA)에서 FTA에 환경조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2007년 4월 2일의 한·미 FTA 협상 타결선언 이후 미국 의회는 환경조항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양국은 2차례의 추가협의를 통하여 환경조항을 강화하게 되었다.¹²⁾ 그 후 한-EU FTA에서도 환경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고, 제 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환경을 규정하였다.¹³⁾ 한·중 FTA에서도 환경은 주된 의제가 되었으며, 환경조항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였다. 중국이 기체결한

3) 2015. 12. 20.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4) 윤성원, “FTA 환경협정에 따른 환경무역 동향 분석과 정책의 시사점: 한-EU FTA를 중심으로”, EU연구 제3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p. 132.

5) 윤성원, 상계논문, p. 130.

6) 정복영·오근엽, “한국 FTA 협정의 환경분야 특성 분석과 적용”, 무역학회지 제40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5, p. 312.

7) 강준하, “한국-EU FTA 환경분야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제31호, 국제법평론회, 2010, p. 2.

8) 윤성혜,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환경규정”, 법학논총 제20집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p. 65; 이재영·김문홍, “FTA체제하에서 환경규정의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2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11, pp. 389-390.

9) 윤성원, 전계논문, p. 134.

10) 강준하, 전계논문, p. 2.

11) 강준하, “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 429; 윤성원, 전계논문, p. 135.

12) 조은래, “한-미 FTA 환경협정의 내용과 이해”, 비교법학 제19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8, pp. 3-5.

13) 강준하, 전계논문, p. 3.

FTA 중에서 최초로 환경조항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한 것은 2013년 7월 체결한 중국·스위스 FTA인데, 구체적인 의무규정보다는 선언적 또는 권고적 내용이다.¹⁴⁾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FTA에서는 환경문제는 주요 협상 의제로 논의되어 왔으나¹⁵⁾, 우리나라, 중국 등은 FTA 협상에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환경 조항에 대하여 적극적이었고, 한·중 FTA에서는 우리나라가 환경 조항에 대하여 적극적이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한·미 FTA 및 한·중 FTA에서의 환경 조항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상반되는 면이 있고, 그것이 실제 협상 결과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FTA 협상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미 FTA의 환경조항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강준하의 “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¹⁶⁾, 조은래의 “한·미 FTA 환경협정의 내용과 이해”¹⁷⁾ 등이 있고, 한·미 FTA의 환경조항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오선영의 “한국-중국 FTA 환경과 무역챕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¹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및 한·중 FTA에서의 환경 조항을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상기의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II. 한·중 FTA 및 한·미 FTA 환경 조항의 의의

1. 한·중 FTA 환경 조항의 의의

한·중 FTA는 2012년 5월 14일 공식 협상(kick-off meeting)을 시작하였고, 2015년 6월 1일 정식 서명되었으며,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한·중 FTA는 공식 협상에서 서명까지 약 3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서명에서 발효까지는 약 반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는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양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은 대표적인 개도국으로 환경보호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환경보호기준이나

14) 오선영, “한국-중국 FTA 환경과 무역챕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 연구 제13권 제3호, 국제경제법학회, 2015, p. 9.

15) 윤성혜, 전계논문, p. 64.

16) 강준하, 전계논문, p. 429; 윤성원, 전계논문, p. 135.

17) 조은래, 전계논문.

18) 오선영, 전계논문.

규정도 약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6월 30일에 체결한 한·미 FTA에서 최초로 환경조항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13년 7월 체결한 중국·스위스 FTA에서 최초로 환경조항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의무규정보다는 선언적 또는 권고적 내용이였다.¹⁹⁾ 이점으로 볼 때,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FTA 환경규정에 대하여 소극적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산업화가 뒤쳐져 있고, 환경기준이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환경기준 강화는 중국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 환경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환경문제에 대하여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중 FTA의 ‘환경 장(environment chapter)’에서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 효과적 집행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적용범위와 핵심적인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환경법 집행, 다자환경협약 준수 등 다방면에서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된다.²⁰⁾ 그리고 환경기준이 보호무역주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기준과 자유무역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앞선 환경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한·미 FTA 환경 조항의 의의

한·미 FTA는 2006년 6월 5일 공식 협상을 시작하였고, 2007년 6월 30일 서명되었으며,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다. 공식 협상에서 서명까지는 약 1년 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나, 공식 서명 이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서명에서 발효까지는 약 5년이 소요되었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진행하였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환경보호에 대해 적극적이고, 환경보호기준도 높다. 미국 무역진흥권한법(TPA)에서 FTA에 환경조항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미국의 환경보호 강화 입장은 FTA에서도 반영되어 왔다. 그 결과 2007년 4월 2일의 한·미 FTA 협상 타결선언 이후 미국 의회는 환경조항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협상에서 환경문제가 핵심의제로 부각되었고²¹⁾, 환경조항을 별도의 독립

19) 오선영, 전제논문, p. 9.

20)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 설명 자료, 2015. 6, p. 113.

21) 조은래, 전제논문, pp. 5~6.

된 장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 최초로 환경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²²⁾ 또한, 한·미 FTA를 통하여 FTA 협상, 통상정책 추진 등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중 FTA에서 환경조항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게 된 데에는 한·미 FTA에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FTA에서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의무, 다자간 환경협정의무의 이행, 환경협의회 설치, 환경 조항 이행에서 대중의 참여확대, 환경협력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된다.²³⁾

Ⅲ. 한·중 FTA 및 한·미 FTA의 환경 조항의 비교

1. 조문구성

한·미 FTA는 “제20장 환경”에서 환경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0장은 11개 조항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FTA는 “제16장 환경과 무역”에서 환경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6장은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부속서는 없다. 조항 수 면에서는 한·미 FTA가 2개 조항이 많다. 참고로 교역규모면에서 한·중 FTA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EU FTA에서는 ‘제13장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노동 조항과 함께 환경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²⁴⁾

22) 강준하, 전제논문, p. 430.

23) 관계부처 합동,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2012. 6, p. 113.

24)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3.1조 배경과 목적, 제13.2조 적용범위, 제13.3조 제13.3조 규제 권리와 보호 수준, 제13.4조 다자간 노동기준과 협정, 제13.5조 다자간 환경 협정, 제13.6조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익한 무역, 제13.7조 법·규정 또는 기준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제13.8조 과학적 정보, 제13.9조 투명성, 제13.10조 지속가능성 영향 검토, 제13.11조 협력, 제13.12조 제도적 장치, 제13.13조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제13.14조 정부간 협의, 제13.15조 전문가 패널, 제13.16조 분쟁해결.

<표 1> 한·미 FTA 및 한·중 FTA 환경조항의 구성

한·중 FTA 환경 조항	한·미 FTA 환경 조항
제16장 환경과 무역 (ENVIRONMENT AND TRADE)	제20장 환경 (ENVIRONMENT)
제16.1조 배경 및 목적 (Context and Objectives)	제20.1조 보호 수준 (LEVELS OF PROTECTION)
제16.2조 적용범위 (Scope)	제20.2조 환경협정 (ENVIRONMENTAL AGREEMENTS)
제16.3조 보호 수준 (Levels of Protection)	제20.3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제16.4조 다자 간 환경협정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제20.4조 절차 문제 (PROCEDURAL MATTERS)
제16.5조 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의 집행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Measures Including Laws and Regulations)	제20.5조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메커니즘 (MECHANISMS TO ENHA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제16.6조 환경영향 (Environmental Impact)	제20.6조 제도적 장치 (INSTITUTIONAL ARRANGEMENTS)
제16.7조 양자 협력 (Bilateral Cooperation)	제20.7조 대중 참여 기회 (OPPORTUNITIES FOR PUBLIC PARTICIPATION)
제16.8조 제도적 및 재정적 약정 (Institutional and Financial Arrangement)	제20.8조 환경협력 (ENVIRONMENTAL COOPERATION)
제16.9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Non-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제20.9조 환경 협의 및 패널 절차 (ENVIRONMENTAL CONSULTATIONS AND PANEL PROCEDURE)
	제20.10조 다자간 환경협정과 관계 (RELATION TO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제20.11조 정의 (DEFINITIONS)
	부속서 20-가 적용대상 협정 (COVERED AGREEMENTS)

2. 목적 및 적용범위

한·중 FTA 제16.1조에서는 환경 장의 배경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지지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증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FTA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 외에 환경보호가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한·중 FTA 제16.1조의 배경과 목적은 실질적으로 한·중 FTA 서문(preamble)²⁵⁾과 동일하다. 한편, 한·미 FTA 제20장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미 FTA 서문에서 환경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FTA가 환경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호가 FTA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성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목적면에서 한·중 FTA가 한·미 FTA에 비해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은 무역거래를 저해할 수 있고, 차별적인 환경 기준은 보호무역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며, 자유무역의 강조는 상대국의 환경기준 완화 또는 철폐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기준과 자유무역은 일응 상충될 수 있다. 한·중 FTA 제16.1조 제3항에서는 환경기준이 보호무역주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기준과 자유무역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점에서 매우 선진적인 환경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중 FTA 제16장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법과 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적용범위로 한다.²⁶⁾ 이 규정을 보면, 현재 시행 중인 환경관련 법, 규정 및 조치는 물론 향후 채택되는 법, 규정 및 조치도 적용범위에 포함된다.²⁷⁾ 따라서 향후 환경 관련 법, 규정 및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제16장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조항의 흠결은 지방정부의 규정과 조치가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²⁸⁾ 한편, 한·미 FTA 제20장에서는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25) 한·중 FTA 서문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및 환경 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장하는 구성 요소이고, 밀접한 경제 동반자 관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26) 한·중 FTA 제16.2조.

27) 오선영, 전계논문, p. 11.

28) 오선영, 전계논문, p. 11.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라 함은 당사국의 중앙정부의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²⁹⁾, 지방정부의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중국이나 미국과 무역거래를 할 때, 중앙정부의 법규 외에 지방정부나 주 차원의 법규가 적용되어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지방정부나 주의 법규 및 조치도 환경 장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점에 있어 지방정부의 법규나 조치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한·중 FTA와 지방정부의 법규나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은 한·미 FTA 모두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협의를 통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환경보호수준

한·중 FTA 제16.3조와 한·미 FTA 제20.1조는 “보호수준(levels of protection)”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³⁰⁾ 한·중 FTA 제16.3조에서 양국은 자국의 환경보호수준과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국은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다.³¹⁾ 자국의 환경보호수준과 환경발전 우선순위는 각 국가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호수준과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역량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분야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본다.³²⁾ 또한, 양국은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high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하며, 자국의 환경보호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³³⁾ 이 규정에서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함을 명시하였는 바, 이 규정은 강한 의무보다는 약한 의무 내지는 권고적 성격이 강하다. 약한 의무 또는 권고적 성격으로 인하여 이 규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 환경기준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한 의무규정 보다는 약한 의무 또는 권고규정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규정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

29) 한·미 FTA 제20.11조.

30) 강준하, 전계논문, p. 432.

31) 한·중 FTA 제16.3조 제1항.

32) 오선영, 전계논문, p. 12; 윤성원, 전계논문, p. 139.

33) 한·중 FTA 제16.3조 제2항.

고 있는데,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없어 그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초래될 수 있다. 산업화에 앞선 우리나라는 국제적 환경협정에서 규정하는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그 보다 낮은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인접국가로 환경문제는 어느 국가보다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바, 양국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규정도 함께 고려하여 환경분야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에서는 양국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자국의 환경발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한·중 FTA 조항과 차이가 없다. 또한, 각 당사국은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도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에 대하여 강한 의무보다는 약한 의무 또는 권고 규정이라는 점과 “높은 수준”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한·중 FTA와 차이가 없다. 다만, 한·미 FTA에서는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환경법과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중 FTA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한·중 FTA 및 한·미 FTA 모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에 대하여 약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³⁴⁾, 이 조항은 보호수준에 대한 양국의 추가 협의를 가능하게 하고, 향후 양국이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 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다자간 환경협정

한·중 FTA 제16.4조 제1항에서는 다자간 환경협정이 환경보호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한·중 FTA 환경 장이 다자간 환경협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6.4조 제2항에서는 무역 관련 환경문제에 관한, 그리고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에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4조 제3항에서는 양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

34) 강준하, 전제논문, p. 433.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4조 각 조항의 효력을 보면, 제3항에서는 다자간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조항에 비해 다자간 협정이행에 대한 비교적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다자간 환경협정’의 범위를 보면, 제1항에서의 ‘다자간 환경협정’에 대해서는 ‘양국이 체약국인 협정’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국 중 일국만이 체약국인 협정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체약국이 아닌 협정도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6.4조제1항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높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세계적 수준의 환경보호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제16.4조 제2항에서의 ‘다자간 환경협정’은 i) 무역 관련 환경문제 그리고 ii)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으로 제한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제16.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다자간 환경협정은 동일하지 않으며, 제1항의 범위가 가장 넓고, 제2항의 범위가 가장 좁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양국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바, 이 규정에 대한 해석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한·미 FTA 제20.2조에서는 부속서에 기재된 다자간 환경협정상 자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해양오염협약 : MARPOL 73/78)”,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국제포경규제협약(IWC)”, “전미열대참치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약(IATTC)” 등 7개의 환경협정³⁵⁾을 열거하고 있고, 이 대상 환경협정

- 35) 가.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개정판)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done at Washington, March 3, 1973, as amended)
 나. 1987년 9월 16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조정 및 개정판)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done at Montreal, September 16, 1987, as adjusted and amended)
 다. 1978년 2월 17일에 런던에서 채택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개정판)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done at London, February 17, 1978, as amended)
 라. 1971년 2월 2일 람사에서 채택된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개정판) (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done at Ramsar, February 2, 1971, as amended)

목록의 수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0.2조의 각주에서 다자간 환경협정의 기존 또는 미래의 의정서, 개정, 부속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적용대상 협정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규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 규정의 위반이 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반을 주장하는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로 볼 때, 제20.2조의 적용대상 다자간 환경협정은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국에 있다.³⁶⁾ 그리고 7개의 다자간 환경협정과 FTA상 의무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협정상의 의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³⁷⁾ 다자간 환경협정 관련 한·중 FTA 및 한·미 FTA 규정의 차이점을 보면, 한·미 FTA에서는 적용대상 다자간 환경협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중 FTA에서는 ‘환경협정’에 대한 정의도 없고, 조항별로 다자간 환경협정의 범위가 달리 해석되어 그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특정 협정이 제14장의 ‘다자간 환경협정’에 해당되는지 다툼이 될 수 있다. 이점에서는 한·미 FTA 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미 FTA에서는 향후 양국이 당사자가 되는 환경협정이 자동적으로 제20장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국이 모두 가입한 환경협정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점에서는 한·중 FTA 조항이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

5. 환경법의 집행 및 환경보호완화 금지

한·중 FTA 제16.5조 및 한·미 FTA 제20.3조에서는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와 환경보호완화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당사

마. 1980년 5월 20일에 캔버라에서 채택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done at Canberra, May 20, 1980)

바. 1946년 12월 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제포경규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done at Washington, December 2, 1946)

사. 1949년 5월 31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done at Washington, May 31, 1949).

36) 관계부처 합동, 전게서, p. 176.

37) 상게서, p. 176.

국이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을 통하여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³⁸⁾ 한·중 FTA 제16.5조에서는 양국간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⁹⁾ 적극적 조치뿐만 아니라 소극적 조치도 본조에 해당되지만, 일방 당사국의 행위가 무역과 투자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 위반이 아니며, 일회성의 조치도 본조 위반이 아니다.⁴⁰⁾ 그리고 자국의 환경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부적절하고, 환경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환경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을 면제하거나 이탈할 수 없다.⁴¹⁾ 환경보호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완화된 국가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경쟁적으로 환경기준을 하향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주된 대상이 무역 및 투자이므로, 모든 영역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기준을 약화시키는 것만 제한된다.

한·미 FTA 제20.3조 제1항에서는 양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환경법 그리고 적용 대상 협정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못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양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제20.11조에서는 “환경법”은 당사국의 법률(statute) 또는 규정(regulation)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⁴²⁾, “환경법”에는 법률 또는 규정은 포함되지만, ‘조치(measure)’는 포함되지 않는다.⁴³⁾ 한·미

38) 강준하, 전계논문, p. 433.

39) 한·중 FTA 제16.5조 제1항.

40) 강준하, 전계논문, p. 433.

41) 한·중 FTA 제16.5조 제2항.

42) ‘environmental law means any statute or regulation of a Party, or provision thereof, the primary purpose of which is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or the prevention of a danger to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through...’.

43) ARTICLE 20.11: DEFINITIONS

statute or regulation means:

(a) for Korea, an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or a regulation promulgated pursuant to an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is enforceable by action of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and
(b) for the United States, an act of Congress or a regulation promulgated pursuant to an act of Congress that is enforceable by action of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FTA 제20.3조도 내용면에서 한·중 FTA 제16.5조와 거의 동일한데, 한·중 FTA 제16.5조에서는 대상 조치를 ‘법과 규정을 포함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제20.3조에서는 i)환경법 ii)제20.2조의 다자간 환경협정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조치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의 대상이 되는 법이나 조치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부여된 보호의 약화 및 감소에 대하여 한·중 FTA에서는 ‘환경법, 규정, 정책 그리고 관행’에서 부여된 보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에서는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호의 부여 범위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미 FTA 제20.11조44)에서는 “환경법”이라함은 당사국이 합은 당사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환경보호 또는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경법”의 해석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적다. 그러나 한·중 FTA은 “환경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환경법의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45), 이는 추후 합의가 필요할 사항이라고 보이고, 추후 합의 시에는 양국이 체약국인 다자간 환경협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양자협력(또는 환경협력)

한·중 FTA 제16.7조 및 한·미 FTA 제20.8조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 제16.7조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한 환경분야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기존의 양자협정을 기반으로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46) 그리고 제16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보급 촉진, 환경기술개발 협력, 환경보호정책 정보교환, 환경전문가 교환, 환경 두뇌집단

44) 환경법이라 함은 당사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다음을 통하여 환경보호 또는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을 말하나, 근로자 안전 또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오염원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방출·방류 또는 배출의 방지·저감 또는 통제나,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유독한 화학물질·물질·재료 및 폐기물의 통제와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전파, 또는.

다.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야생 식물 또는 동물, 그 서식지, 그리고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 지역의 보호 또는 보전

45) 강준하, 전계논문, pp. 433~434.

46) 산업통상자원부, 전계서, p. 115.

(think-tanks) 협력메커니즘 구축, 환경시범단지 조성발전 등의 예시 목록을 수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7월 3일 서명된 “한-중 환경협력양해각서” 등 기존 양자협정에서 언급된 ‘대기오염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포함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⁴⁷⁾ 환경협력은 환경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당사국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⁴⁸⁾, 한·중 FTA 제16.7조 제2항의 예시목록⁴⁹⁾에 규정된 환경보호정책 정보교환, 환경전문가 교환, 환경 두뇌집단 협력메커니즘 구축 등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인접국가이고 서해를 공유하고 있어 환경분야에 있어 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4년 7월 3일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체결을 통해 중국내 제철소에 우리나라의 집진, 탈질·탈황기술을 적용하는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바⁵⁰⁾, 한·중 FTA 제16.7조는 제16장 전체의 실효성 및 양국간 환경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조항이라고 본다.

한·미 FTA 제20.8조에서는 환경보호역량을 강화하고 환경보호가 양국간 무역 및 투자관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증진에 중요하고, 약국간 협력이 공동의 환경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환경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한·미 FTA 제20장 및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른 환경협력 활동에 관하여 대중의 의견 및 권고를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다른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상호간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⁵¹⁾

양자협력 관련 한·중 FTA와 한·미 FTA의 차이를 보면, 한·중 FTA에서는 양자협력을 위하여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보다는 ‘기존의 양자협정’을 기반으로 협력활동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협력분야에 대하여 7가지의 구체적 목록

47) 산업통상자원부, 전제서, p. 115.

48) 김정곤·금혜윤, “주요국의 FTA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 64; 오선영, 전제논문, p. 13.

49) 가. 환경친화제품을 포함한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보급 촉진
나.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증진에 관한 협력
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과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
라. 환경전문가 교류를 포함한 환경 두뇌집단 협력 메커니즘 구축
마. 환경분야의 워크샵, 세미나, 박람회 및 전시회를 포함한 역량 구축
바. 각국에서 시범지대로서 환경산업단지 조성
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50) 2014. 7. 7.자 환경부 보도자료.

51) 강준하, 전제논문, p. 439.

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양자협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록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환경협력에 있어 한·중 FTA는 기존의 양자협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환경협력에 있어 의견조율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의 양자협정으로 제한함으로써 양자협력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한·중 FTA는 협력분야를 열거함으로써 협력분야를 명확히 하였고, 이는 환경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7. 환경영향 평가

한·중 FTA 제16.6조에서는 FTA 발효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FTA의 이행이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검토 기술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의무사항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환경영향을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중 FTA의 규정을 보면, ‘인정한다’는 문구가 많이 있는데, ‘약속한다’는 ‘인정한다’보다는 구속력이 강한 바, 환경영향평가는 약한 의무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한·미 FTA 제20.8조 제5항에서는 무역 협정 및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무역 협정 및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 조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의무사항인지 불명확한 바, 이에 대한 양국간 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8. 제도적 장치

한·중 FTA 제16.8조에서는 환경 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상대국과의 접촉선(contact point)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행정부 내에 지정하고, 그 사무소를 통하여 환경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은 행정부 내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환경과 무역위원회(Committee on Environment and Trade)’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제20.6조에서 양국은 환경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는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를 설치하며, 환경 장의 이행

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에 있어 한·중 FTA와 한·미 FTA의 차이점을 보면, 한·중 FTA에서는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환경 장의 이행에 있어 한·중 FTA의 규정이 보다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와 한·미 FTA 모두 환경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각 ‘환경과 무역위원회’와 ‘환경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회합시기에 있어 환경과 무역위원회는 ‘필요시’ 회합하는데, 환경협의회는 FTA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소집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시’ 회합한다. ‘필요시’ 회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환경협의회는 필요 여부를 떠나 FTA 발효일로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회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환경협의회 의제 개발에 있어 대중과의 대화 등 대중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과 무역위원회에 대해서는 대중의 참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중의 참여는 환경관련 정책의 정당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절차인 바, 이점에서 한·미 FTA는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⁵²⁾ 참고로 유럽연합은 2003년에 새로운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⁵³⁾, 이 제도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분석항목(경제적 영향 9개, 사회적 영향 9개, 환경적 영향 11개)을 제시하고 있는데⁵⁴⁾, 그 중에서 환경적 영향분석 항목이 11개로 가장 많으며, 영향평가 과정에서 공공협의를 포함시키고 있다.

9.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과의 관계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바, FTA에서 무역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의되어 왔다.⁵⁵⁾ 기후변화 관련 가장 중요한 협약인 1992년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⁵⁶⁾ 및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그리고 신기후체제 파리

52) 오선영, 전제논문, p. 19.

53) The Evaluation Partnership, “Evaluation of the Commission’s Impact Assessment System”, *Final Report*, April 2007, p. 2.
(http://ec.europa.eu/governance/impact/key_docs/docs/tep_eias_final_report.pdf).

54) 박영도·안성경,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I), 한국법제연구원, 2007, p. 27.

55) 윤성혜, 전제논문, p. 64.

56)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협정과 한·중 FTA 환경조항 및 한·미 FTA 환경조항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 및 지구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⁵⁷⁾, 교토의정서에 의해 탄소거래시장이 성장하게 되었다.⁵⁸⁾ 우리나라도 2008년 8월 환경과 성장의 균형을 도모하는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였고⁵⁹⁾, 2015년 1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였다. 한편,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기간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규범이 필요해졌고,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는데⁶⁰⁾,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의정서로 볼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환경 장의 다자간 환경협정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한·미 FTA에서는 적용대상 다자간 환경협정을 7개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유엔기후변화협약은 7개의 환경협정 목록에 없다. 따라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한·미 FTA 제20.2조의 다자간 환경협정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의정서인 교토의정서도 제20.2조 및 동 각주에 따라 다자간 환경협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6년 1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은 196개국이며, 그 중에서 192개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체결국이며,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⁶¹⁾ 따라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는 한·중 FTA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다자간 환경협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가 제16조제2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무역 관련 환경문제’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는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율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무역을 규율하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한편, 한·미 FTA 제20.2조의 부속서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열거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무역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본

57) 박명섭 외,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유럽연합(EU) 신규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규칙에 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p. 160.

58) 손우식·박명섭, “탄소배출권 거래 분쟁과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p. 266.

59) 이은정·박명섭, “탄소배출 감축제도의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p. 330.

60) United Nations,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2015.12.12., FCCC/Cp/2015/L.9/Rev.1.

61)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 <<http://newsroom.unfccc.int/about/>>, 검색일: 2016.1.10.

우리나라는 1993. 12. 14. 47번째로 가입하였다(외교부, 기후변화 바로알기, 외교부, 2015, p. 18).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파리협정이 발효되는 경우⁶²⁾ 한·중 FTA 제16.4조 제1항의 다자간 환경협정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파리협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다자간 협정에도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한·미 FTA 제20.2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정서에 해당되는 파리협정도 한·미 FTA 제20.2조의 적용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우리나라는 51개국과 FTA가 발효 중인데, 교역규모나 기대효과에 있어서 한·중 FTA 및 한·미 FTA는 가장 중요한 FTA라고 볼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FTA 협상에서도 환경과 무역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FTA 협상에서 환경을 주요 의제로 고려해 왔는데, 그 이유는 환경규제가 전 세계의 국제교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⁶³⁾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교역규모 확대 외에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설정 등 환경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⁶⁴⁾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 최초로 환경조항을 독립된 장(chapter)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중 FTA에서도 환경조항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고 있고, 중국은 환경면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접국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산업화 및 환경규제수준으로 볼 때, 한·중 FTA와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중 FTA 환경조항 및 한·미 FTA 환경조항 모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자국법은 물론 다자간 환경협정의 준수, 환경협력 강화, ‘환경협의회’ 또는 ‘환경과 무역위원회’의 설치, 포괄적인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어 다방면에서 환경보호 및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거대한 국가이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 의한 환경

62) 2016년 4월부터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서명을 받게 되고, 55개국 이상, 그리고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게 되면 발효된다.

63) 윤성혜, 전계논문, p. 65.; 송백훈, “녹색성장과 FTA”,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p. 115.

64) 정복영·오근엽, 전계논문, p. 312.

규제도 많으며, 양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한·미 FTA 환경조항에서는 중앙정부의 법, 규정 및 조치만 대상으로 하고 지방정부의 규정 및 조치는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중 FTA 환경조항에서는 지방정부에 의한 규정 및 조치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다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규정의 내용이 의무 보다는 선언적 또는 권고적 성격이 강하고, 일부 규정은 약한 의무인지 권고적 규정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환경조항의 이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조항의 실효성 및 FTA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한·중 FTA 환경조항 및 한·미 FTA 환경조항에서는 양국간 환경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FTA 환경조항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있어 양국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절실함을 양국이 인정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준하, “한국-EU FTA 환경분야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제31호, 국제법평론회, 2010.
- _____, “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김정곤·금혜윤, 주요국의 FTA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관계부처 합동,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2012. 6.
- 박영도·안성경,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I), 한국법제연구원, 2007.
- 박명섭 외,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유럽연합(EU) 신규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규칙“에 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 설명 자료, 2015. 6.
- 손우식·박명섭, “탄소배출권 거래 분쟁과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 송백훈, “녹색성장과 FTA”,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 오선영, “한국-중국 FTA 환경과 무역챕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3호, 국제경제법연구학회, 2015.
- 외교부, 기후변화 바로알기, 외교부, 2015.
- 윤성원, “FTA 환경협정에 따른 환경무역 동향 분석과 정책의 시사점: 한-EU FTA를 중심으로”, EU연구 제3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4.
- 윤성혜,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환경규정”, 법학논총 제20집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윤이숙,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정책적 함의”, 환경정책 제17권 제3호, 환경정책학회, 2009.
- 이은정·박명섭, “탄소배출 감축제도하의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 이재영·김문홍, “FTA체제하에서 환경규정의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2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11.
- 정복영·오근엽, “한국 FTA 협정의 환경분야 특성 분석과 적용”, 무역학회지 제40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5.

조은래, “한·미 FTA 환경협정의 내용과 이해”, 비교법학 제19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8.

The Evaluation Partnership, “Evaluation of the Commission’s Impact Assessment System”, *Final Report*, 2007.

United Nations,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2015.12.12., *FCCC/Cp/2015/L.9/Rev.1*, 2015.

ABSTRACT

A Comparison of Environment Clauses under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Myong-Sop PAK · Sang-Man KIM · Jung-Wouk WOO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are the most significant FTA in volume and economic effect for Korea's perspective. Developed countries have dealt with environmental issues one of the main issues in FTA negotiation, while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reluctant to it. Both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have separate environment chapter respectively. A separate environment chapter was firstly introduced in Korea-U.S. for Korea's perspective. Both environment chapters provide high level of environment protection, recognition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Both environment chapters require that each party make effort to improve environmental laws and measures. Korea-China FTA provides establishment a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Trade", and Korea-U.S. FTA provides establishment a "Environment Council"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 clauses.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have very similar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and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environment protection. However, a lot of provisions are somewhat declaratory rather than mandatory. Therefore, further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ncouraged to achieve the goals and objectives of the environment clauses and FTA.

Keywords : Korea-China FTA, Korea-U.S. FTA, Environment Clauses, Environment Chapter, Free Trade Agreement (FTA), Environment